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‘24.10.22.)됨
에 따라,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
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
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규정(안 제30조의2)
- 나.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
부과 기준 마련(안 별표 7 제2호마목 및 비교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5. 2. 4. ~ 3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(補綴用)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 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-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4.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
5.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

6.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
7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

제39조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법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	법 제49조제5항	10
---	-----------	----

별표 7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 : 마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</u> 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</u> <u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</u> <u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(補綴用)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</u> <u>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</u> <u>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</u>

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
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
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
받은 사람
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등록된 5·18
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
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
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
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
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
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
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
판정을 받은 사람

4.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
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
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
차

5.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
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
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
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
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
자동차

제3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49조제1항부터 <u>제4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	6. <u>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</u> 7. <u>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</u> 제3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 ----- <u>제5항</u>----- ----- ---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29